

# 2023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2024. 02.



서일대학교  
SEOIL UNIVERSITY

# 【 목 차 】

## I. 대학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 목적 및 필요성 .....	4
2. 자체평가 추진 체계 및 절차 .....	4
3. 자체평가 시행 .....	6
4. 자체평가 결과 활용 .....	8

## II. 대학 자체평가 결과

【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	9
【기준 2】 교육과정 .....	19
【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	27
【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	37
【기준 5】 학생 .....	43
【기준 6】 교·직원 .....	52

## III. 대학 자체평가 결과

총체적인 분석 및 평가 .....	59
--------------------	----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

## 대학 자체평가 개요



## 1. 자체평가 목적 및 필요성

### □ 자체평가 목적

-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평가하여 대학의 현재 위치를 점검함과 동시에 대학 발전을 기획·추진하여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학 내 행정절차 표준화·체계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대학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에게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제공하여 수요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가 과정에 동참하면서 대학 비전을 향한 목표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원동력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음

### □ 자체평가 필요성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함
-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2009년 7월 대학자체평가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가진단과 개선노력의 기반을 마련함

### □ 자체평가 관련 규정

법 및 규정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해당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및 공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자체평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학칙 제19장(자체평가)	· 자체평가 실시
대학자체평가규정	· 평가대상, 영역, 평가기구, 방법 및 절차 등

## 2. 자체평가 추진 체계 및 절차

### □ 자체평가 추진 체계

- 대학은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인정기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맞추어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인 ‘서일대학교 3in1 자체평가시스템(소관부서 확인,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총장 보고)’을 구축하였으며, 2년 단위로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함

- 2023년 자체평가 실시는 대학자체평가규정 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거하여 교육부 인정기관 고등 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맞추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대학은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학사운영, 조직경영, 시설관리, 산학협동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 이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토대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정보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의 책무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함



[그림] 자체평가 추진 체계

□ 자체평가 추진 절차

- 대학은 PDCA(Plan-Do-Check-Act)의 자체평가 추진 절차를 통해 대학 교육품질 및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대학의 비전·인재상·교육목표·발전계획을 실현시키고 있음



[그림] 자체평가 추진 절차

### 3. 자체평가 시행

#### □ 자체평가 기준

- 기관평가인증 구성체계는 6개 기준의 13개 세부기준, 30개의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요소는 다시 19개의 정성평가(□, 63%)와 11개의 정량평가(△, 37%)로 구분됨

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 1.1.1 대학발전계획
		□ 1.1.2 교육품질개선
	1.2 대학경영	□ 1.2.1 조직과 운영
		△ 1.2.2 재정 운용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 3.1.1 학생선발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 3.1.4 학업 성취도 평가
		□ 3.1.5 원격수업(해당대학에 한함)
		□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3.2 교수학습	□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 4.1.1 산학협력활동
		△ 4.1.2 취·창업 지원
	4.2 현장실습	□ 4.2.1 현장실습 지원
	4.3 평생교육체제	□ 4.3.1 평생교육 지원
		△ 5.1.1 학생복지
5. 학생	5.1 학생복지	□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 5.1.3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5.2.1 도서관
	5.2 교육시설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5.2.3 정보보안 지원
		△ 6.1.1 인사관리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 6.1.2 역량개발
		△ 6.1.3 연구
		△ 6.2.1 처우 및 복지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6.2.1 처우 및 복지

## □ 자체평가 방법

- 평가 시기 : 2022, 2023학년도 (회계 등 일부 정량지표는 2021, 2022학년도 적용)
- 정성지표 평가방법

관점	주요 내용
정확성	· 인증기준에 적합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는가?
객관성	· 입증자료가 효과적, 객관적으로 수집·분석되었는가? · 입증자료가 대내·외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타당성	· 입증자료에 근거를 둔 결론인가? · 대학의 실천 내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충족성	·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잠재적인 부분(내용)이 있는가?
반영성	· 대학의 주된 관심사나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가? · 대학의 여건을 반영한 평가가 실시되었는가?
현실성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 대학의 제시한 계획에 대해서 실천해 왔는가?

- 정량지표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지표	판단 수준
1.2.2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2.2.1	전공 강좌당 학생 수	학년도별 평균 33명 이하 또는 모든 전공강좌 40명 이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3.1.1	신입생 충원율	연도별 수도권·비수도권 평균의 90% 이상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80% 이상
4.1.2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전체 60%, 예체능계 46%, 예체능계 제외 62% 이상
5.1.1	장학금 지급비율	10% 이상
5.2.1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5.2.2	교사 확보율	100% 이상
6.1.1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6.1.3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6.2.1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30% 이상 또는 교직원 41% 이상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11% 이상 또는 교직원 41% 이상

- 판정 기준 : 충족(Y), 보완(C), 미충족(N)으로 평가

평가결과	평가 판단
충족(Y)	· 평가요소의 요구수준 모두 충족(Y)
보완(C)	· 평가요소의 1개 이상 보완(C) 판정 및 평가요소 판단사항의 내용에서 미충족(N) 판정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단기간 이내에 보완(C)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미충족(N)	· 평가요소의 1개 이상 미충족(N) 및 미충족 정량평가지표가 요구수준 80%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질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

#### 4. 자체평가 결과 활용

##### □ 대학의 체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표로 활용

- 기준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체계 개선 및 발전 자료로 활용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시 주요 지표로 활용

##### □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및 비교과 분석 자료로 활용

-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등 영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선도적 교육체계 수립
-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행정 체제 수립 및 개편

##### □ 대학의 교육과정 체계 개선 및 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대학의 교육과정 현황 확인으로 선순환적인 경영 시스템 유지 및 개선
- 주요지표의 검토·분석·평가로 부서별 업무 개선사항 도출

##### □ 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

- 대학의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직원의 변화와 혁신 마인드 정착
- 학과평가, 교수업적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활용을 통한 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 □ 대학의 현황 및 자체평가 대국민 공시

- 대학홈페이지, 대학알리미를 통한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별 수준 공개
-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에게 평가결과 제공



[그림] 자체평가 결과 활용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기준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1.1	1.1.1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고 있는가?  a)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확인 b)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확인 c)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확인	<b>a)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확인</b> - 대학은 1974년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간 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과 전문직업 기술을 연마하여 산업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육목적, 교훈,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대학의 사명(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양성) 및 교육목표(창의융합형 교육, 현장중심형 교육, 자기주도형 교육, 인성지성형 교육)를 제정하였음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는 대학 홈페이지, 대학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시스템, 발전계획 현판, 행정업무편람, 교직원수첩 등을 통하여 대학 구성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b>b)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확인</b> - 대학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 융합 인성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란 구체적인 인재상을 담아 '창의융합형 교육, 현장중심형 교육, 자기주도형 교육, 인성지성형 교육'이라는 대학 교육목표를 수립함. 이에 창의적인 사고(사명)→창의융합형 교육(교육목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겸비(사명)→현장중심형 교육(교육목표), 정직한 삶을 실천(사명)→자기주도형 교육(교육목표), 폭넓은 인성과 교양 겸비(사명)→인성지성형 교육(교육목표)으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b>c)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확인</b> - 대학의 사명은 2011년 대학종합경영컨설팅과 연계한 서일대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대학종합경영 컨설팅(2011.04.29.), 기획위원회 심의(2011.11.16.), 대학평의원회 자문(2011.12.19.)과 학생, 학과, 행정부서의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2012.04.04.)을 거쳤으며, 기획위원회의 수정 심의(2012.05.14.), 교무위원회의 심의(2012.06.05.), 대학평의원회의 자문(2012.06.08.)을 거쳐 대학의 사명과 연계한 대학 발전계획을 이사회 승인(2012.12.19.)을 거쳐 제정되었음 - 대학의 교육목표는 VISION 2025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2015년 종합 만족도 조사(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분석 및 교직원 설문조사(2016.01.18.), 전체교직원회의(2015.09.23.), 학과장회의(2015.11.02., 2015.12.07.)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요구분석, 대학평의원회 자문(2016.02.22) 및 이사회 승인(2016.02.23)을 거쳐 제정되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a)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확인 b)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인 c)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확인	<b>a)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의 발전계획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종합만족도 조사 분석과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TFT를 구성(2021.11.30.),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의견수렴(행정부서, 학과)(2022.01.24., 2022.02.14.), 학생회의(2022.02.18.)등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의 정관, 규정(기획위원회규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교무위원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획위원회(2022.02.10.),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22.02.23.), 대학평의원회(2022.02.23.), 교무위원회(2022.02.24.), 이사회(2022.02.25.)를 거쳐 수립하였음 - 대학의 발전계획은 대학발전계획 TFT구성→대학구성원 의견수렴(교직원회의 등)→기획위원회 심의→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대학평의원회 심의→교무위원회 심의→이사회 심의의 추진체제를 거쳐 수립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학발전계획평가에 의거하여 발전계획 이행과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평가환류에 의거하여 발전계획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평가를 거쳐 개선 방안을 다음연도 운영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음  <b>b)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인</b> - 중장기발전계획 The FUTURE 2025+(2022-2025)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종합만족도 조사(2021.11.~2021.12.) 분석, 행정부서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 1차(2021.12.01.), 2차(2022.01.24.)를 거쳐, 학과의견 수렴(2022.02. 14.), 학생의견 수렴(2022.02.18.)을 진행하여 대학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획위원회(2022.02.10.),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22.02.23.), 대학평의원회(2022.02.23.), 이사회(2022.02.25.)를 거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b>c)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확인</b>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The FUTURE 2025+ 5대 전략, 17개 전략과제, 48개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대학 재정부운영 종합 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또한, 학년도별 계획 및 담당 부서별로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학생교육, 산학협력, 학생지원, 교육환경, 교원역량, 대학운영에 우수한 교육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충족
		(3) 대학은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a)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확인 b)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확인 c)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확인	<b>a)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확인</b>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제8조, 사무분장규정 제3조에 의거 기획조정처에서 평가를 담당하며, 수시로 발전계획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매년 기획위원회 등 부서별 소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 심의에 의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운영함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b>b)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확인</b></p> <p>-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The FUTURE 2025+ (2022~2025) 5대 전략(미래 교육 체계 강화, 산학-지역협력 가치창출, 학생진화형 캠퍼스 확대, 학생성공역량 강화, 성장주도 경영혁신) 및 세부실행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담당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실행 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중장기발전계획의 담당부서별 목표를 명시하고 목표 대비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음</p> <p><b>c)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확인</b></p> <p>-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의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거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음. 또한, 전략, 실행과제, 성과 지표(KPI)를 도출하고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대학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음</p>	
	1.1.2	<p>(1)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p> <p>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자체평가 추진조직 확인 c)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확인</p>	<p><b>a) 관련규정 및 준수 확인</b></p> <p>- 대학은 교육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품질 평가와 환류에 관한 규정인 3in1 평가·환류시스템 운영지침, 기획위원회규정 등 부서별 소관위원회규정, 대학자체평가규정, 교육품질개선위원회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 대학은 교육품질 평가와 환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2022년 1회(하반기), 2023년 1회(하반기) 등 매년 1회 이상 대학의 전 영역(대학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학생지원,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 등)을 자체평가함</p> <p><b>b) 자체평가 추진조직 확인</b></p> <p>-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 전담부서인 기획조정처 성과관리팀과 소관부서인 산학협력처, 교육혁신본부, 혁신운영본부 등을 두고, ①기획위원회 등 부서별 소관위원회, ②자체평가위원회, ③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순으로 실행되는 ‘3in1 평가·환류시스템’의 자체평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3단계 절차별 그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음</p> <p><b>c)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확인</b></p> <p>- 대학은 교육목표(창의융합형 교육, 현장중심형교육, 자기주도형 교육, 인성지성형 교육)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전 영역(대학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학생지원,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 등)과 연계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교육수요자 만족도, 재학생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NCS기반 교육과정, 산학협력 활동, 혁신지원사업 등의 6개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50개의 평가지표를 수립</p> <p>- 대학은 자체평가 평가영역의 평가지표별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유형(정량, 정성), 평가방법(절대, 상대), 평가주기(1년), 평가시기(학기말) 및 평가지표 연계성(발전계획 및 정부평가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함</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2)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p> <p>a) 자체평가 시행 실적 확인            b)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확인            c)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확인</p>	<p><b>a) 자체평가 시행 실적 확인</b>            - 대학은 교육품질의 개선을 위해 ‘3in1 평가·환류시스템’ 체계에 따라 ①기획위원회 등 부서별 소관위원회, ②자체평가위원회, ③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3단계 절차를 2022년 1회, 2023년 1회 운영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함</p> <p><b>b)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확인</b>            - 대학은 매년 주기적으로 ‘3in1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추진사업을 평가 및 환류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행정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p> <p><b>c)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확인</b>            - 대학은 교육품질 성과평가 보고서 및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학 그룹웨어시스템(게시판), 대학 홈페이지(대학 생활)에 공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를 구성원(학생, 교직원)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경영진(총장, 보직처장)에게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대학의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 위한 자체평가 결과의 행정부서 이행여부와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학년도 말에 업무협조전을 통해 해당부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함</p>	<p>충족</p>
		<p>(3)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가?</p> <p>a) 조사체계 확인            b) 조사실적 확인            c)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확인</p>	<p><b>a) 조사체계 확인</b>            -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수행을 위해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기획위원회규정(제3조 기능), 대학자체평가규정(제4조 기능), 3in1평가·환류시스템 운영지침(제4조 평가대상)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절차는 ①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보고 ②외부 전문기관 선정 ③설문문항 의견수렴 ④설문문항·조사방법 등 검토(기획위원회 심의) ⑤조사 시행 및 분석 ⑥ 조사결과 보고 ⑦조사결과 보고회 개최(결과보고서 배포) ⑧ ‘3in1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한 당해년도 조사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전년도 개선사항 이행결과 검토 ⑨ ‘3in1 평가·환류시스템’ 당해년도 심의 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 안내 ⑩전년도 개선사항 이행결과 포스터 게재            - 대학은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규정에 의거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체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내용의 적절성, 조사방법의 타당성, 조사대상 및 표본의 객관성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함</p> <p><b>b) 조사실적 확인</b>            - 대학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과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교육과정, 학생서비스, 학사운영, 교육환경, 교원, 직원, 이미지 등)에 대해 교육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음</p>	<p>충족</p>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상: 재학생 3,882명, 재학생 F.G.I. 58명, 졸업생 300명, 산업체 150명, 교직원 130명, 학부모 322명, 지역사회 100명, 지역사회 심층인터뷰 10명</li> <li>· 2023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상 : 재학생 3,411명, 재학생 F.G.I. 58명, 졸업생 300명, 산업체 130명, 교직원 93명, 학부모 311명, 지역사회 110명, 지역사회 심층인터뷰 10명</li> <li>- 대학은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영역) 별로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고, 최근 3개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며 상·하위 점수의 조사항목을 확인하여 우선개선요소를 도출함</li> <li>· 2022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재학생 63.1점, 졸업생 58.3점, 산업체 73.4점, 교원 57.2점, 직원 54.0점, 학부모 66.4점, 지역사회 66.3점</li> <li>· 2023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재학생 64.3점, 졸업생 64.4점, 산업체 77.4점, 교원 60.2점, 직원 55.5점, 학부모 67.6점, 지역사회 61.3점</li> </ul> <p><b>c)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우선개선요소를 부서에 안내하여 부서별 우선개선요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in1평가·환류시스템(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을 통해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 및 실적을 검토함</li> <li>- 대학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3in1평가·환류시스템(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대상, 설문문항 및 조사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함</li> </ul>	
1.2	1.2.1	<p>(1)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a)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확인</p>	<p><b>a)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정관 제7장(직제) 제2절(대학교)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총장, 대학행정부서, 부속시설에 대하여 규정하며, 학칙 제2장(직제) 및 제18장(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근거한 직제규칙 등에 의거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사무분장규정에서는 학칙 제2장(직제) 및 직제규칙 제4조(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부서의 문서결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대학은 구성원의 권한, 역할, 책임을 규정으로 명시하여 대학을 운영함</li> </ul> <p><b>b)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조직은 서울대학교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조직 및 업무를 분장하고, 구성원의 권한, 책임, 역할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2)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문서관리 체계를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p> <p>a) 대학의 규정체계 확인            b)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확인            c)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p>	<p><b>a) 대학의 규정체계 확인</b>            - 대학은 제 규정의 신설 및 변경, 폐지 등을 위하여 규정류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제2장(규정류의 체계), 제3장(제정, 개정 및 폐기)에서 제 규정 입안, 예고 및 의견수렴, 심의, 공포 및 시행 등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p> <p><b>b)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확인</b>            - 대학은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류 관리는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규정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규정의 제 개정, 폐지 시 소관부서 입안, 기획조정처 예고 및 의견수렴 결재, 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7일 이상, 학칙은 20일 이상), 검토의견서 수합, 교무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공포 및 시행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학칙 개정시에는 교무위원회 심의 전에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침), 반드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각종 규정을 제 개정 및 폐지하고 있음</p> <p><b>c)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b>            - 대학은 생성한 문서와 기록의 식별, 열람, 보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을 갖추고 공문서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문서의 구성, 기안문서의 작성, 문서의 발송 및 접수), 문서의 보존 및 폐기, 협조사무, 문서 관리 대장 등 각종 대장,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보존기간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 문서의 모든 처리를 그룹웨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p>	<p>충족</p>
		<p>(3)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는가?</p> <p>a)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확인            b)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확인            c)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조치 확인</p>	<p><b>a)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하여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을 갖추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등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b>b)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확인</b>            - 대학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인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무위원회 등을 체계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개최, 운영,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함</p> <p><b>c)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조치 확인</b>            - 대학은 학과의 개설, 통폐합이나 폐지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통폐합으로 인한 대상 학과 교원 운영 및 학생의 피해방지 방안을 위해 학칙, 학과구조조정때문에교원처우규정, 학사구조조정에 따른 학적 관련 학생 보호 지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p>	<p>충족</p>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1.2.2	<p>(1) 대학은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 변경 및 결산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가?</p> <p>a) 예산 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p> <p>b) 예산 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확인</p> <p>c)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p>	<p>a) <b>예산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b></p> <p>- 대학은 서일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시 중장기발전계획의 5대 전략 및 특성화전략과 연계하여 자금 예산 편성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요구서를 통해 행정부서, 학과의 의견을 수렴함. 또한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p> <p>b) <b>예산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확인</b></p> <p>- 예산편성 : 대학은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규칙의 특례규칙에 따라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p> <p>- 예산집행 :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대학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32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명령(기안)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집행하고 있음</p> <p>- 예산변경 :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변경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p> <p>- 결산 :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감사, 대학 내 심의·자문, 이사회 제출 및 심의·확정, 대학 홈페이지 공개, 관할청(교육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사학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이월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c) <b>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p> <p>- 대학은 외부회계법인 감사, 내부법인 감사,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p>	충족
		<p>(2) 교육비 환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교육비 환원율]</p> <p>a) 충족: 100.0% 이상</p> <p>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p>a) <b>충족:</b>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21회계연도 141.1%, 2022회계연도 147.5%로 평가기간 내 100.0% 이상을 유지하였으므로 충족 판정함</p>	충족
		<p>(3)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p> <p>a) 다양한 자원 확보 실적 확인</p> <p>b) 자원 확보 노력 확인</p>	<p>a) <b>다양한 자원 확보 실적 확인</b></p> <p>- 대학은 기부금 수입, 전입금 수입, 산업체 위탁과정 수입, 전공 심화과정 수입, 계약학과 수입, 외국어교육원 수입, 평생교육원 수입, 이자수입,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 등 자원 다각화 및 확대를 통해 재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p> <p>b) <b>자원 확보 노력 확인</b></p> <p>- 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등 학생모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1.2.3	<p>(1) 대학은 감사를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p> <p>a) 감사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감사 관련 담당부서 확인            c)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확인            d)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확인</p>	<p><b>a) 감사 관련 규정 준수 확인</b>            - 대학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법인 세방학원 정관, 내부감사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거 법인 외부 회계 감사, 내부감사(산학협력단 포함)를 시행하고 있음</p> <p><b>b) 감사 관련 담당부서 확인</b>            - 대학은 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내부감사규정,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거하여, 사무처와 기획조정처, 산학협력단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함</p> <p><b>c)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확인</b>            - 대학은 내부감사 규정에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신고 절차, 내부신고자 비밀보장, 내부신고자 불이익금지, 내부신고자 권한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p> <p><b>d)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확인</b>            - 대학운영에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는 사립학교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 제4항에 의거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를 매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자체감사는 대학 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 및 학과에 공개하고 있음</p>	충족
	1.2.4	<p>(1)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준수 하고 있는가?</p> <p>a) 윤리 규정 확인            b)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c)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p>	<p><b>a) 윤리 규정 확인</b>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직원 복무규정, 성희롱성폭력에방및처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이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렴에 기반한 직무수행의 자세를 확립하도록 윤리강령을 명문화하여 공유하고 있음</p> <p><b>b)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b>            - 대학은 경영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행 재정적인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바 없으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의 준수,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 들을 제 위원회에서 심의, 재정운영에 대한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행 재정적 윤리적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음</p> <p><b>c)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b>            - 대학은 관계 법령 및 성희롱성폭력에방및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2023년(9회)            · 연구윤리 교육 : 2023년(1회)            · 청탁금지법 교육 : 2023년(온라인 1회)            · 위 교육실적을 통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및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관 차원의 관리, 감독 관련 부정 비리로 행정처분, 교육부,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으로 신분상 처분을 받거나 형사판결에 의해 형사벌이 확정되는 등으로 정부 제재대상이 된 사실이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건 및 교직원징계 위원회가 개뢰된 사실이 없으며, 윤리적 책무 준수를 노력하고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하고 있는가?  a) 지역사회 봉사계획 확인 b) 지역사회 봉사실적 확인	<b>a) 지역사회 봉사계획 확인</b> - 대학은 구성원의 사회적 책무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갖추고, 지역사회 가치공유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가치공유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VISION 2025+ 서일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5) 5대 전략「사회적 가치 창출형 지역산학 연계 강화」와 The FUTURE 2025+ 서일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22~2025) 5대 전략「산학·지역협력 가치 창출」의 세부 실행 과제인 지역사회 봉사(협력)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가치공유본부 운영계획, 행정부서 운영 계획, 혁신지원사업 자율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  <b>b) 지역사회 봉사실적 확인</b> - 대학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은 지역사회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중랑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장애인 취업연계 프로젝트, 대학 주차장 지역사회 공유를 시행함 - 학생들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에서 포상함 - 사회봉사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시행하고, 매학기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편성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운영함 - 학과 차원의 전공 연계 봉사활동과 교직원 봉사(기부)활동을 진행함 -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함 - 지역사회 협력·기여 전략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헌 활동에 대한 공로 및 성과를대외적으로 인정받음	충족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2] 교육과정

[기준2] 교육과정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1	2.1.1	<p>(1) 대학은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p> <p>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p>b)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확인</p> <p>c)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p>	<p><b>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 및 학위 수준에 부응하는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직무역량지원센터운영규정, NCS기반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 전공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NCS기반교육과정품질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li> <li>- 대학은 교육과정운영규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제3조의4(교과목의 폐쇄 절차), 제7조(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NCS기반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 제4조(교육과정개발의 절차), 제4조의2(교육과정개편의 절차), 전공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 제2조(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제4조(교육과정 개발(개편) 완료 절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중심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있으며, 직무역량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심의사항),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 대학평의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직무역량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회 자문, 총장의 승인 절차를 통해 전공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있음</li> </ul> <p><b>b)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산업체 요구수준, 학위수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하여 NCS기반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의 교육과정개발(개편) 절차(제4조, 제4조의2), 전공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의 교육과정개발(개편)의 절차(제2조, 제3조)에 따라 산업동향, 인력동향, 지역동향 등 외부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li> <li>- NCS기반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의 교육과정개발(개편) 절차(제4조, 제4조의2), 전공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 교육과정개발(개편) 절차(제2조, 제3조)에 따라 의견수렴(산업체, 재학생, 졸업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반영하고 있음</li> </ul> <p><b>c) 교육과정 개발(개편)실적 (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산업현장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교육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직무역량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학평의회 자문과 총장 승인의 절차에 따라 전공교육 교육과정을 확정된 실적이 있음</li> <li>· 2022학년도 실적 : 개발 2개 학과, 개편 27개 학과</li> <li>· 2023학년도 실적 : 개발 29개 학과</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2) 대학의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p> <p>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확인            c)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            d)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p>	<p><b>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p> <p>-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 및 학위 수준에 부응하는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양교육센터운영규정, 교양교육과정운영지침,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 대학은 교육과정운영규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교양교육과정운영지침 제4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제6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절차), 제8조(교양 교과목의 개폐 절차), 제10조(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양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조(업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센터운영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교양교육센터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총장의 승인 절차를 통해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있음(근거자료 13~16, 19~27)</p> <p><b>b)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확인</b></p> <p>-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중장기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교양역량[창의융합역량(창의, 복합적문제해결, 지식정보활용, 의사소통)과 SQ역량(대인관계, 자기관리및개발, 직업윤리, 감성지능)]을 설정하고, 교양역량(8대 핵심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 달성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실시하고 있음</p> <p>- 대학은 학과의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 산업 수요 등에 근거하여 연관성이 높은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을 설정하고, 교양역량(8대 핵심역량)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 달성을 위한 직업기초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실시하고 있음</p> <p><b>c)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b></p> <p>-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양성 목표, 학생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하여 NCS기반교육과정개발·개편지침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제4조, 제4조의2), 교양교육과정운영지침의 제6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절차)에 따라 산업동향, 인력동향, 지역동향 등 외부환경 분석과 의견수렴(산업체, 재학생, 졸업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반영하고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b>d)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산업현장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및 교양교육과정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 과정을 개발(개편)하고, 교양교육센터운영 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학평의회 자문과 총장 승인의 절차에 따라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을 확정된 실적이 있음</li> <li>· 22학년도 실적 : 개편(신설 및 폐지) 16개 교과목</li> <li>· 23학년도 실적 : 개편(신설 및 폐지) 8개 교과목</li> </ul>	
2.2	2.2.1	<p>(1)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 규정에 따라 전공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a)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 확인  c)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공지 확인</p>	<p><b>a)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현장중심의 전공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운영규정 등 전공교과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갖추고 있음</li> <li>- 대학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전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칙시행세칙 제35조(교육과정의 편성학점)에 따라 수업 연한별 2년제 75학점, 3년제 110학점, 4년제 130학점 이상의 교육과정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운영규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에 따라 전공교과 편성 시 실습시수 비율 50%이상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전공교육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li> </ul> <p><b>b)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현장중심의 전공교육 운영 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교육목표, 교과목개요, 학습 목표, 학습내용, 성취수준, 평가방법, 운영 방법 등을 작성하여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li> <li>- 대학은 학과별 직무능력 수준이 제시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직무역량기반 교육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 수강생들에게 상시로 제공 및 안내하고 있음</li> </ul> <p><b>c)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공지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는 학생에게 상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은 직무역량기반 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li> <li>· 2022학년도 강의계획서 실적 : 1학기 1,550건, 2학기 1,396건</li> <li>· 2023학년도 강의계획서 실적 : 1학기 1,304건, 2학기 1,250건</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 실적 c)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확인	<b>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전공교육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신청 및관리규정, 기자재선정및관리위원회규정, 실험실습비관리규정,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 등 실험실습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대학은 현장중심 전공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신청및관리규정 제4조(신청), 제8조(관리업무), 제10조(수리)에 따라 실험실습기자재의 신청,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자재선정및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심의)에 따라 학과별 기자재 지원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험실습비관리규정 제3조(예산배정)에 따라 학과별 실험실습비를 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b>b)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 실적</b> -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신청및관리규정에 따라 전공교육 운영에 필요한 학과별 기자재 수요조사를 실시(근거자료 12)하고, 기자재 선정및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기자재 자산등록, 기자재 점검, 기자재 수리, 기자재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한 실적이 있음  <b>c)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확인</b> - 대학은 연구실(실험실습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및 연구활동중사자 보호를 위해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총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실험실습실 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은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험실습실 연구활동중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공제보험 가입,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통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충족
		(3) 실험실습비 지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b>  a) 충족: 평가기간 내 평균 157천원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평가기간 내 평균 170천원(2021회계연도 170천원, 2022회계연도 170천원)으로 인증기준인 평균 157천원 이상이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4)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 학년도별 전공강좌당 학생 수]</b> a) 충족: 학년도별 전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 이하이거나 모든 전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40명 이하인 경우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전공 강좌당 학생 수는 2022년도 평균 25.2명(1학기 25.6명, 2학기 24.9명) 2023년도 평균 26.4명(1학기 27.6명, 2학기 25.1명)으로 인증기간 내 평균 33명 이하이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5)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환류하고 있는가?</p> <p>a) 관련규정 및 준수 확인            b)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            c) 평가 및 환류 실적 확인</p>	<p><b>a) 관련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운영지침,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NCS기반교육과정품질관리지침, 3in1평가·환류시스템 운영지침,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대학은 현장중심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제10조(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라 매학기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NCS기반교육과정품질관리지침 제2조(학과 교육과정 자체평가위원회), 제5조(학과 자체평가)에 따라 매년 학과별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 제4조(평가 대상), 제5조(체계)에 따라 전공교육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p> <p><b>b)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b>            - 대학은 현장중심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를 위하여 매학기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학기별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매년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연 단위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라 직무역량지원센터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를 거쳐 대학의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p> <p><b>c) 평가 및 환류 실적 확인</b>            - 대학은 전공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과별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학기별 운영결과 분석 및 연 단위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른 평가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환류하고 있음</p>	충족
		<p>(6)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가?</p> <p>a) 학사제도 관련 규정 확인            b)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 확인</p>	<p><b>a) 학사제도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현장중심 전공교육 운영을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융합교육과정시행세칙, SU형다중트랙교육과정시행세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운영규정, 현장실습학기제시행세칙, 집중수업운영규정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춘 학사제도 관련 규정을 갖추고, 주·야간교차수강, 전과,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융합교육과정, 원격수업, 계절학기, 집중수업, 프로젝트중심학습 등의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b>b)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 확인</b>            - 대학은 현장중심의 전공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융합교육과정, 디지털신기술트랙, 프로젝트중심학습, 산업</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수요맞춤형교육과정,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원격수업, 진로탐색교과목 개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p> <p>- 대학은 학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과 및 재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과제도 확대, 성적 상대평가 비율 조정, 재수강신청 가능 학점 조정 등 학사제도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사제도 관련 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있음</p>	
	2.2.2	<p>(1)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p> <p>a)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인 b) 추진체계 확인 c) 운영실적 확인</p>	<p><b>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p> <p>- 대학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양교육센터 운영규정, 교양교육과정운영지침, 원격수업시행세칙, 사회봉사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학칙 제32조(교육과정), 제33조(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 제33조(교육과정 및 이수), 교육과정운영규정 제2조(교육과정의 범위),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에 따라 교양교과(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p> <p><b>b) 추진체계 확인</b></p> <p>- 대학은 체계적인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혁신본부를 전담조직으로 교양교육센터와 직무역량지원센터를 운영조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추진체계를 갖추고, 교양교육센터에서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 운영 및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직무역량지원센터에서는 직무역량 기반의 직업기초 운영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양교육센터운영위원회,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양교육과정자체평가위원회를 배치하여 교양교육 운영의 질 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p> <p><b>c) 운영 실적 확인</b></p> <p>-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운영,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칙 제33조(교과이수)에 따라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2년제 6-10학점, 3년제 8~14학점, 4년제 25~28학점으로 편성 및 운영하고,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 실적이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a)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 확인 b) 평가 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 확인	<b>a)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 확인</b> -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를 위하여 매학기 교양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학기별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매년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수요조사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연 단위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라 교양 교육센터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를 거쳐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b>b) 평가·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학기별 운영 결과 분석 및 연 단위 교양 교육과정 만족도 수요조사와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3in1 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른 평가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환류하고 있음	충족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기준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3.1	3.1.1	<p>(1) 대학은 공정한 학생선발 기준을 공지하고 입학 전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p> <p>a) 학생선발 기준 공지 및 대학 정보 제공 확인            b)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 확인            c)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 확인</p>	<p><b>a) 학생선발 기준 공지 및 대학 정보 제공 확인</b>            -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학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선발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학알리미에 게시하고 있음            - 대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모집요강을 대학 입시 홈페이지, 대입 공동원서접수(진학사,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고등학교에 모집요강을 발송하여 학생선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p> <p><b>b)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 확인</b>            - 대학은 입학관련 업무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 위원을 위촉하고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입시 공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입학전형 자체감사, 면접 및 실기고사 평가진행 입회 등 입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의 중복 배치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p> <p><b>c)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학칙 및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입학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모집요강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전형, 지역적 차별 해소를 위한 농어촌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등을 시행하고 있음</p>	충족
		<p>(2)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신입생 충원율]</p> <p>a) 충족: 매년 신입생 충원율 평균(수도권, 비수도권)의 90% 이상 충족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p><b>a) 충족:</b> 신입생 충원율은 2022학년도 100%, 2023년도 100% 충원으로 충족판정함</p>	충족
		<p>(3) 대학은 신입생 선발(모집)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p> <p>a)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 대한 평가 실시 확인            b)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 확인</p>	<p><b>a)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확인</b>            - 대학은 매년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하여 입시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b>b)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 확인</b> - 대학은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 환류 및 개선하고 있음 - 개선 사례: 모집요강 수시·정시 통합본 제작, 학과 소개시 7개 학부로 안내, 연계교육 성적 5.5 등급 조정, 입학박람회 개최(참석) 및 입학홍보(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강화, 진학담당교사 자문단 위촉 등	
	3.1.2	<b>(1) 수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준수되고 있는가?</b>  a) 학점 당 수업기간(시수) 준수 확인 b)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 확인 c)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b>a) 학점 당 수업기간(시수) 준수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 제13조(수업일수), 제33조(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 제45조(교과별 출석부),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7조(휴강 및 보강), 계절학기운영규정 제6조(수업시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학기 학점당 15주(15시간) 이상의 수업기간(시수)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학점 당 수업기간(시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학칙시행세칙 제40조(휴강),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3조의2(수업관리), 제7조(휴강 및 보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휴·보강 실시 및 수업기간(시수) 준수 여부를 3단계(①점검 계획 수립 ②수업 및 출석부 점검 ③학사관리위원회 평가 및 환류)절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수업기간(시수)준수 확인: 100% 준수 · 2023학년도 수업기간(시수)준수 확인: 100% 준수  <b>b)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칙 제39조(출석의무), 제40조(출석인정), 학칙시행세칙 제45조(교과별 출석부), 제47조(출석인정), 제56조(출석부 및 답안지 보관), 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 제5조(출석 및 학점인정 절차), 제6조(출석 및 학점인정), 원격수업시행세칙 제10조(출석 및 평가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의 수강과목별 총 15주 출결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스마트출결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출결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과는 지속적으로 결석자 관리를 실시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과 연계하는 등 학생 출결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칙시행세칙 제46조(출석), 제46조의2(부정출석방지), 제50조(결석, 지각, 조퇴),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평가 기준(총점의 20%)을 정하고,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에서 교과목당 시간 단위별 출석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와 관련된 엄정한 수업 관리를 위하여 수업 운영 및 출결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석부 점검,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학사경고예방 관리(연속결석자 및 장기결석자 점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평가, 개선 및 환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학년도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준수 확인: 1학기 1,550건(100.0% 준수), 2학기 1,396건(100.0% 준수)</li> <li>· 2023학년도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준수 확인: 1학기 1,450건(100.0% 준수), 2학기 1,391건(100.0% 준수)</li> </ul> <p><b>c)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시행세칙 제 40조(휴강), 제41조(보강 및 대강), 제45조(교과별출석부),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7조(휴강 및 보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강 사유 발생 시 수업 7일 전까지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휴·보강 관련 업무는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li> <li>- 대학은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3조의2(수업관리), 학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휴강에 따른 보강 실시 여부를 3단계(①점검 계획 수립 ②보강 및 출석부 점검 ③학사관리위원회 평가 및 환류) 절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li> <li>· 2022학년도 휴·보강 점검 실적 : 1학기 1,760건(100.0% 준수), 2학기 1,232건(100.0% 준수)</li> <li>· 2023학년도 휴·보강 점검 실적 : 1학기 1,778건(100.0% 준수), 2학기 1,632건(100.0% 준수)</li> </ul>	
		<p>(2) 대학은 교원의 강의시수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p> <p>a) 강의시수 관련 규정 확인 b)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 확인</p>	<p><b>a) 강의시수 관련 규정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학칙,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교과담당및강사료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강사의 강의시수(책임 및 제한시수)를 정하고 있음</li> </ul> <p><b>b)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원이 교육 및 학생지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칙 제37조(교수시간),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8조(전임교원의 강의배정), 제9조(강의시간배정), 교과담당및강사료지급규정 제2조(전임교원의교과담당), 제4조(전임교원 책임시수), 별표 1(보직 및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및 제한시수의 관한 사항)에 따라 일반교원, 강의중점교원, 외국인교원의 주당 담당시수(책임시수 9시수, 제한시수 18시수),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주당 담당시수(책임시수 6시수, 제한시수 18시수)를 정하여 강의시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9조(강의시간 배정), 교과담당및강사료지급규정 제3조(전임의 교원의 교과담당)에 따라 겸임교원의 주당 담당시수(9시간 이내, 총장 승인 후 12시간까지), 강사의 주당 담당시수(6시간 이내 총장 승인 후 9시간까지)를 정하여 강의시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3) 대학은 학생의 수강 신청 지도와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a)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수강신청 지도 체계 확인 c) 학사경고 관리 체계 확인	<b>a)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수강신청, 수강신청 정정 및 재수강 신청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학칙 제38조(수강신청), 학칙시행세칙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정정), 제28조(수강신청 절차), 제29조(수강신청지도)에 따라 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와 업무협조전을 통해 구성원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학과에서는 학칙 제29조(수강신청지도), 학칙시행세칙 제71조(재수강), 제71조의2(재수강상담지도)에 근거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에 의한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등)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b>b) 수강 신청 지도 체계 확인</b> - 대학은 수강신청 관련 계획에 따라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 및 졸업 기준 등을 기재한 학사관리기준표를 제공하여 학생 수강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는 학칙 제29조(수강신청지도)에 따른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을 통한 수강신청 지도, 학칙시행세칙 제71조(재수강), 제71조의2(재수강상담지도)에 따른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재수강 지도 및 상담 일지 작성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b>c) 학사경고 관리 체계 확인</b> - 대학은 학칙 제45조(학사경고), 학칙시행세칙 제69조(학사경고), 학칙시행세칙 제69조의2(학사경고자 예방 및 지도)에 따라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사경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3단계 절차(① 학사경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안내 ② 학사경고 예방 관리 및 학사경고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관리 ③ 학사경고자 상담, 학사관리위원회 평가 및 환류)에 따른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경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학사경고 예방 및 학사경고자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2학년도 학사경고 관련 상담 실적: 1학기(590명), 2학기(520명) · 2023학년도 학사경고 관련 상담 실적: 1학기(603명), 2학기(617명)	충족
	3.1.3	(1) 대학의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재학생 등록유지율]  a) 충족: 80.0%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2년 89.7%, 2023년 89.3%로 인증기준인 80%를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a) 재학생 관리 체계 확인 b)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 위한 평가 확인 c)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 위한 개선 실적 확인	<b>a) 재학생 관리 체계 확인</b> -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율을 위하여 학칙 제27조(전과), 제29조(복학), 제36조(계절학기), 제65조(납입금), 학칙시행세칙 제26조의2(주야간 교차 수강신청), 제32조(타 학과 교과목 수강), 제69조의2(학사경고자 예방 및 지도), 평생 지도교수제운영규정, 전과운영규정, 계절학기 운영규정,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 학사관리위원회규정, 지표관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재학생 등록유지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학생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학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b>b)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평가 확인</b> -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생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학생 관리 체계에 대해 학사관리위원회, 학생지원위원회, 지표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음  <b>c)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학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입생 초기 적응 및 진로설정을 위한 진로 탐색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 및 시행하고 신입생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동기 프로그램 개발, 서일인성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지표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높이고 재학생 등록유지와 관련된 유관부서의 정책을 일원화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재학생충원율 향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재학생 등록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선 실적: 진로탐색 교과목 15개 학과(33개 강좌) 개설 ·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일인성캠프 운영 · 제도 개선 실적: 전과운영규정 제5조(전과의 제한) 개정, 재학생충원율향상위원회 신설	충족
3.1.4	(1) 대학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a)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		<b>a)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산업체 요구 수준과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업성적처리규정,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등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학칙 제43조(성적), 학칙시행세칙(성적등급),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 제5조(성적의 입력), 제6조(성적의 열람 및 정정), 제7조(성적의 보관),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제7조(수업평가)에 따라 학업 성취도 평가[출석평가(20%)+직무수행능력평가(80%)]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학생이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 및 학습목표, 성취수준 등을 강의계획서 또는 평가계획서에 제시하여 상시 제공함으로써 수강생 스스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b>b)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b> - 대학은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이 달성해야 할 성취수준이 기재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교육목표, 교과목개요, 학습목표, 학습내용, 성취수준, 평가방법,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교과목별 성취수준 등 평가 기준 및 계획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취수준 및 평가방법이 기재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직무역량기반 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상시 제공하여 그 근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2) 대학은 학생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성과 부진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가?  a)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 확인 c)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실적 포함) 확인	<b>a)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업성적처리규정, NCS기반교육과정 운영지침 등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대학은 성적평가 및 학점 부여 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칙 제 43조(성적), 학칙시행세칙 제56조(출석부 및 답안지 보관), 제57조(성적등급), 제60조(부정행위자처리),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 제5조(성적의 입력), 제6조(성적의 열람 및 정정), 제7조(성적의 보관), NCS기반교육과정운영지침 제7조(수업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학기 성적 처리와 관련된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성적 처리와 관련된 업무 내용의 안내를 통해 학업성적처리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b>b)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 확인</b> - 대학은 성적 결과에 대한 학생의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칙시행세칙 제61조(성적정정), 학업성적처리규정 제6조(성적의 열람 및 정정)에 따라 매학기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관련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성적처리 관련 절차와 방법, 기간이 명시된 내용을 업무협조전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투명하고 공정한 성적 처리를 위하여 3단계 관리 체계(①성적 입력 ②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 ③성적 정정)에 따라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성적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b>c)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실적 포함)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습성과 부진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 의한 상담(학사경고자 상담, 학사경고위험군 상담, 장기결석자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 방법 및 능력 향상을 위한 비 교과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학습성과 부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li> <li>- 대학은 교과목별 향상과정을 운영하여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피드백 및 보충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적향상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학사경고자의 학업 성취도 제고를 도모하는 등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졸업유급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기 종료 후 학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관리 방안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음</li> </ul>	
	3.1.5	<p>(1) 대학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p> <p>a)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확인  c)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인</p>	<p><b>a)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원격수업시행세칙, 원격교육 지원센터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li> <li>- 대학은 교육과정운영규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원격교과목에 대해 개발(개편)하고 있고,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에 따라 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원격수업시행세칙 제3조(원격수업 교과목 개발·개편 운영 지원)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있음.</li> </ul> <p><b>b)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원격수업을 주관하는 원격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콘텐츠 제작지원,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고 있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통해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 등을 평가하여 환류하고 있으며, 교무처(원격수업 개설 지원), 학과 및 교양교육센터(원격수업 개설, 개발, 운영)와 유기적인 협력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음.</li> </ul> <p><b>c)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학습관리시스템과 매체제작 장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및 고도화하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2) 대학은 원격수업에 관한 학사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수업을 관리하고 있는가?</p> <p>a)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 확인            b)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확인            c)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확인</p>	<p><b>a)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 확인</b>            - 대학은 학칙 제39조(출석의무), 제40조(출석인정), 학칙시행세칙 제45조(교과별 출석부), 제47조(출석인정), 제56조(출석부 및 답안지 보관),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 원격수업시행세칙 제10조(출석 및 평가관리)에 따라 수강과목별 총 15주 출결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p> <p><b>b)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확인</b>            - 대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적평가 및 학점부여를 위하여 학칙 제43조(성적), 학칙시행세칙 제57조(성적등급),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및 산출방법) 및 원격수업시행세칙 제10조(출석 및 평가관리) 등의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강의계획서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평가, 성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학점부여를 하고 있음            - 대학은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수업 운영에 관한 평가(강의평가, 만족도 조사 등) 및 환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격수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p> <p><b>c)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확인</b>            - 대학은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규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제3조(수업시간), 제6조(분반 및 폐강)에 따라 학사운영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제12조(교육혁신본부)에 따라 전담조직인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원격수업 개발(개편)·운영 지원, 학습관리시스템 및 매체제작 장비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평가(강의평가, 만족도 조사 등) 및 환류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p>	충족
3.2	3.2.1	<p>(1) 대학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p> <p>a) 교수학습 지원 추진 체계 확인            b)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확인</p>	<p><b>a) 교수학습 지원 추진 체계 확인</b>            - 대학은 교수 강의역량 및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센터 등 지원조직과 연계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b>b)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서일핵심역량진단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접수된 의견을 통해 프로그램에 개선 계획을 세워 차기 반영하고 있음	
		(2) 대학은 학생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a)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확인 b)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확인 c)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b>a)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매년 학생에 대한 이해와 기초학습능력 향상 전략 방안을 세우기 위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학습능력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b>b)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운영 중이며, 비교과 프로그램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b>c)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평가체계에 따라 3in1평가·환류시스템(소관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교육품질개선위원회)을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차기 개선계획을 세워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충족
		(3) 대학은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a)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확인 b)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실적 확인 c) 교수 강의역량 향상 지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b>a)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확인</b> - 대학은 학위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강의평가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등 강의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b>b)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하여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교수법 특강, 강의개선자가진단, 교수법 연수, 교수법 연구회 등을 교원구분 및 계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  <b>c)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매년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도출, 3in1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충족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기준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4.1	4.1.1	<p>(1)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p> <p>a)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확인                      b)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p>	<p><b>a)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일대학교직제 규칙, 사무분장규정, 산학협력단직제규정, 산학협력단업무분장시행세칙, 산학협력활동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운영, 계약학과운영규정 등 다양한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b>b)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은 서일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직제규정, 산학협력단업무분장시행세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지원 조직으로 설치하여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직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 및 중점과제(①산업체 연계 학생 교육, ②현장실습 체계적 지원, ③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④교직원 산학협력 역량 강화, ⑤산업체 지원 확대, ⑥ 산학 수익률 극대화)를 수립하고, 산학협력활동 지원 조직인 산학협력처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을 운영·지원하며, 산학협력활동 성과 분석, 평가, 환류를 실시하는 지원 조직별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협력활동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음</p> <p><b>c)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b>                      - 대학은 산학협력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중점과제의 ④교직원 산학협력 역량 강화 세부사업 중 산업체 경력이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교원의 산학협력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중점과제의 ①산업체 연계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산학협력 교육환경,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강의실, 산학협력 프로젝트 활용 공간 등을 조성하여 물적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산학협력 환경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산학협력 사업을 발굴, 신청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대학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조직 및 추진체제를 갖추고,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2) 대학은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a)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b>a)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b>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5대 전략과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산학협력활동 6대 중점과제 및 26개 세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의 6대 중점과제 및 26개 세부사업에 따른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의 성과지표를 산학협력활동 운영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b>b)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 등 산학협력활동 질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개선 관련 다양한 규정을 갖추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학협력활동을 개선하고 있음 - 대학은 당해년도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에 전년도 산학협력활동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산학협력활동 운영 성과 및 개선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6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 및 산학협력활동 운영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산학협력활동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산학협력활동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충족
	4.1.2	(1)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a) 취·창업활동 지원 규정 확인 b) 취·창업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담당인력, 업무분장 등) 확인 c) 취·창업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	<b>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일대학교 직제규칙과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운영규정 외 4개 규정에 의하여 취·창업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학칙 및 규정, 규칙, 지침에 의하여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b>b) 지원조직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은 서일대학교 직제규칙에 따라 학생의 취·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창업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한 실적이 있음 - 대학은 서일대학교 직제규칙에 따라 취창업지원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창업 지원부서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취·창업지원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b>c) 인프라 구축 확인</b> - 대학은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직 및 인적, 물적(서일어울림라운지, 일자리카페, 서일메이커센터 외 시설), 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함 - 대학은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인적)을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전담인력배치, 진로·취업지도 연수과정, 창업지도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물적)을 위하여 서일어울림라운지 운영, 일자리카페,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비대면강의실, 그룹스터디실, 서일 메이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제도)을 위하여 평생지도교수제, 취업전담교수제, 산학협력중점교원, 창업휴학제, 조기취업자·글로벌현장학습 학점인정,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자 포인트 장학금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ul>	
		(2) 대학은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a)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 b)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b>a)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수요자 요구분석에 따라 취·창업지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지원활동, 취업지원활동, 창업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각종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 의하여 부서 운영 계획서에 의하여 취·창업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별 경력개발 로드맵에 의하여 교과-비교과 연계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함</li> </ul> <b>b)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취·창업지원활동 성과 개선을 위해 수요자(학생, 산업체, 교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3in1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개선함</li> <li>- 대학은 취·창업활동 평가를 위하여 진로·취업 부분에 취업진로위원회(2회), 대학청년 고용협의회(1회), 창업지원 부분에 창업지원 운영위원회(2회), 벤처창업동아리 운영위원회(3회)를 소관위원회로 두고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실적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 평가결과와 미달성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취·창업지원 차년도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음</li> </ul>	충족
		(3)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b> a) 충족: 평가기간 내 평균 건강보험 및국세 DB 연계취업률 60% 이상(전체), 또는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이고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이 62%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취업률은 평가기간내 평균 68.4%(공시기준 2022년 67.9%, 2023년 68.9%)로 인준기준인 60%를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4.2	4.2.1	(1) 대학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a)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 확인 b)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 확인	<b>a)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의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칙, 학칙시행세칙,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현장실습학기제시행세칙 등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li> </ul> <b>b)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 전담조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무처 및 학과를 지원조직으로 구성하여 현장실습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체계적인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관리시스템(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을 구축하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학과(학과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환류),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대학 현장실습 운영 계획 심의 및 운영결과 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실습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음</li> </ul> <p><b>c)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과 전반적인 실습생 안전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시행세칙 제7조(학생 보호) 및 제8조의3(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에 따라 학생 대상의 학과별 사전교육, 현장실습 지원센터 사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의 실습생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실습 학생 안전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li> </ul>	
		<p>(2)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p> <p>a)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 b)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p>	<p><b>a)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현장실습지원센터 행정부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전담 조직(현장실습지원센터)과 지원조직(교무처, 학과)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 계획에 근거한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행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에 연계하여 수립된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한 실적이 있음</li> <li>· 2022학년도 운영 실적: 실습기관 167개, 실습이수 1,325건, 예산집행 137,402천원(137,402,376원), 현장실습활성화지수(재학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기관지원비 지급) 달성률 101.6%</li> <li>· 2023학년도 운영 실적: 실습기관 171개, 실습이수 2,079건, 예산집행 166,430천원(166,430,740원), 현장실습활성화지수(재학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기관지원비 지급) 달성률 100.1%</li> </ul> <p><b>b)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 운영 성과에 대한 3단계 평가(①단계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②단계 자체평가위원회→③단계 교육품질개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 분석, 현장실습 운영 결과 분석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li> <li>- 대학은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행정부서 운영 계획에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4.3	4.3.1	<p>(1) 대학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p> <p>a) 평생교육 운영 관련 규정 확인            b) 평생교육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확인</p>	<p><b>a) 평생교육 운영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칙,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평생교육원운영규정,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규정 등 평생교육 운영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b>b) 평생교육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은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 전담조직으로 평생교육원 내에 평생교육운영팀과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계발 학습활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학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유아·보건·IT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전임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 및 운영결과 평가·환류),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위원회(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 및 운영결과 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음</p> <p><b>c)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확인</b>            -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량구청 및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하여 중량구청 위탁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중량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사업 등 지역평생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요양원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예품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을 시행한 실적이 있음</p>	충족
		<p>(2) 대학은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p> <p>a)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평생교육 운영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p>	<p><b>a)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b>            - 대학은 사무분장규정 제21조(평생교육원)에 따라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평생교육원 행정부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지원 전담조직으로 평생교육원 내에 평생교육운영팀과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치하고,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 계획에 근거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행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에 연계하여 수립된 평생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음</p> <p><b>b)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평생교육원운영규정,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평생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소관위원회(3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 분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p>	충족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5] 학생



**[기준5] 학생**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5.1	5.1.1	(1) 대학은 학생복지 지원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a) 학생복지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확인 c) 학생복지 지원 실적 확인	<b>a) 학생복지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위하여 학칙, 서일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분야별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생복지·자치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학습역량지원, 취·창업지원, 교육환경개선, 학생 의견수렴과 관련된 34개의 다양한 학생복지 지원 규정을 갖추고 있음  <b>b)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확인</b> - 대학은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성원의참여및소통규정,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갖추고, 매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학생의견 및 요구사항 조사, 교육시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학생자치기구 의견수렴(간담회, 건의서), 학생복지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기·수시로 수립된 학생복지 관련 의견을 기반으로 매년 행정 부서별 운영계획 및 세부실행 과제를 수립하여 학생복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b>c) 학생복지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에 의거하여 수립된 학생복지 지원 계획에 따라 행정 부서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지원 실적 : 장학금 지원 등 10개 항목 6,584,343천원(6,584,343,452원) · 2023학년도 지원 실적 : 장학금 지원 등 10개 항목 10,369,942천원(10,369,942,072원)  -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 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 부서별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2) 대학은 보건실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a) 보건실 관련 규정 확인 b) 유(有)자격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 확인	<b>a) 보건실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건강과 안정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일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실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관리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b>b) 유(有)자격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 확인</b> - 대학은 보건실에 전문면허(간호사)를 갖춘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혜(면허취득 21.03.17., 근무기간 21.10.01~22.03.31)</li> <li>· 유○주(면허취득 18.02.19., 근무기간 22.04.01~22.08.31)</li> <li>· 임○리(면허취득 17.03.03., 근무기간 22.09.01~현재)</li> <li>- 보건실은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병상, 상비약, 혈압 및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 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li> <li>· 2022학년도 운영 실적 : 이용자수 812명, 약품 구입 등 7,920천원(7,920,950원)</li> <li>· 2023학년도 운영 실적 : 이용자수 1,742명, 약품 구입 등 8,000천원(8,000,000원)</li> </ul>	
		(3)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 장학금 지급 비율]</b> a) 충족: 10.0%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20회계연도 기준 15.7%, 2021회계연도 기준 15.7%, 2022회계연도 기준 15.4%로 인증기준인 10.0%를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5.1.2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 하고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a) 학생활동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b>a)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 확인</b> - 대학은 학생활동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칙, 학생지원규정, 학생단체운영규정, 전공동아리운영규정 등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38개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활동 지원 관련 행정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운영, 결과보고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b>b)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은 학생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을 갖추고, 학생복지·자치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학습역량지원, 취·창업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분야별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3in1평가·환류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행정 부서별 운영계획 추진에 따른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생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학 및 학생자치기구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의 사명 달성 및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로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언론기구로 서울방송국, 서울학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공간, 자원,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충족
		(2)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a)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 실적 확인 b) 학생활동 지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b>a)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생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매년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 부서별 운영계획 및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활동 및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지원 실적 : 학생활동 1,216,802천원(1,216,802,779원), 학생자치활동 130,666천원(130,666,830원) · 2023학년도 지원 실적 : 학생활동 685,083천원(685,083,365원), 학생자치활동 157,705천원(157,705,660원)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b>b)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3in1평가환류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소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교육품질개선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행정 부서별 운영계획 및 세부실행과제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있음</li> <li>· 2022학년도 개선 실적 : 행복한 학과 동아리 운영에 따른 기준 완화 등</li> <li>· 2023학년도 개선 실적 : 전공동아리 운영비 사용 건의에 따른 운영활용성 완화 등</li> </ul>	
		<p>(3) 대학은 학생행사 관련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p> <p>a)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 확인 c)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확인</p>	<p><b>a)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과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지원규정, 학생집단활동안전관리규정, 보건실운영규정, 시설물관리규정, 성희롱·성폭력에방및치리규정, 서울대학교집단연수운영안전확보매뉴얼을 갖추고 있음</li> </ul> <p><b>b)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행사 안전관리 전담부서로 학생지원처, 지원부서로 환경안전혁신본부를 두고,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생 축제 및 체육대회, 학생자치기구 LT 등의 행사 시 학생집단활동안전관리규정 제3조(책임자 지정), 제4조(준수사항), 제5조(사고 발생 시 조치)에 따라 관련 조직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학생 안전관리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음</li> </ul> <p><b>c)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성폭력·각종 폭력 예방 교육, 대학 종합보험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행사 안전관리 및 교육, 학과별 일일지도교수 편성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지도에 노력함</li> </ul>	충족
5.1.3		<p>(1)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p> <p>a)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유(有)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확인</p>	<p><b>a)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 대학생활 적응, 진로설계 등을 위한 적절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으로써 심리와 진로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개선 및 환류 체계를 시행하고 있음.</li> </ul> <p><b>b)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 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제2조의2, 제3조)에 의거하여 상담부와 연구부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li> <li>- 상담부에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생활 지원을 위한 심리건강증진 프로그램(상담전문가 개인 심리 및 진로상담, 정신건강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적응지원 프로그램(대학생활 적응진단,</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서일 FIT 프로그램, 대인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감염병관리 마음튼튼 프로그램, 정신건강 워크숍,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초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지원 프로그램(상담전문가 개인 진로상담, 드림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p> <p>- 연구부에서는 재학생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확보, 각종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인권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p> <p><b>c) 유(有)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확인</b></p> <p>- 대학은 학생상담센터 인력 조직을 센터장 1인, 전임상담사 1인, 혁신지원사업 전문상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전임상담사 자격요건(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자)을 명시함으로써 심리상담 공인 자격을 갖춘 전임상담사 1인과 혁신지원사업 전문상담사 1인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함. 또한 학생상담센터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하여 주 5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를 운영 중임.</p>	
		<p>(2)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p> <p>a) 진로·심리 상담 운영 실적</p> <p>b)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p>	<p><b>a) 진로·심리 상담 운영실적</b></p> <p>- 대학은 정신건강(심리), 진로, 학업, 경력개발, 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관한 사항과 우수한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성공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대학 홈페이지,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성공관리시스템, 대학 요람, 신입생 대학생활 매뉴얼, 학생상담센터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학생상담센터는 홍보 영상 자체 제작, 홍보 리플렛 신규 제작,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심리 및 진로 관련 상담과 검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 해마다 새롭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및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를 노력하고 있음</p> <p><b>b)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b></p> <p>- 대학은 학생상담센터의 주관으로 타 부서 간 학습 및 진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운영중임</p> <p>- 대학은 학생상담센터 전문 상담가의 심리 및 진로 관련 검사 실시와 해석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다양한 고민(성격, 정서, 행동, 진로, 학업 등)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자기계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신입생 대상 진로 전수조사 실시를</p>	<p><b>충족</b></p>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통해 학생 지도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교원 연수를 통해 전수조사 검사 해석 방법, 학생 흥미유발 검사 해석을 학습 지원 함으로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있음</p>	
	5.1.4	<p>(1)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p> <p>a)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 확인</p> <p>b)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인</p> <p>c)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확인</p>	<p><b>a)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학칙 등의 작성)에 따라 학칙 제17조의2에 명시하고, 해당 학생들이 차별 또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서일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장애학생지원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소수집단 학생지원규정 등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행정부서 운영계획서의 세부실행과제에 반영된 장애 학생 및 소수집단학생 상담, 세움·돋움 진로상담 프로그램, 장애·다문화가족·외국인·탈북민 학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학생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li> <li>· 2022학년도 지원 실적 : 정기상담 294건, 세움·돋움 진로상담 프로그램 44명(장애 9명, 다문화가족 35명), 장학금 지급 59,927,780원(1학기 24명, 2학기 26명), 교직원 및 재학생 장애인식개선 교육 3,629명</li> <li>· 2023학년도 지원 실적 : 정기상담 45건, 세움·돋움 진로상담 프로그램 48명(장애 14명, 다문화가족 34명), 장학금 지급 22,331,320원(1학기 18명, 2학기 19명), 교직원 및 재학생 장애인식개선 교육 3,751명</li> </ul> <p><b>b)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칙, 서일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 규정, 장애학생지원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1명, 직원 1명)를 설치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li> </ul> <p><b>c)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장애학생의 생활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차장, 승강기, 도서관 장애 학생 좌석, 화장실, 축지도, 축지판, 점자블럭, 도움호출벨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대용 확대기, 휴대용 음성독서기, 컴퓨터 보조기기 등 각종 학습 보조기기를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환경안전혁신 본부의 협력지원체계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li> </ul>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5.2	5.2.1	<p>(1) 도서관은 규정 및 추진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p> <p>a)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확인            b)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 확인</p>	<p><b>a)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칙, 서울대학교 직제규칙, 사무분장규정, 도서관운영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 등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b>b)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 제81조(부속 및 부설기관),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제14조(도서관)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장 1명, 전문인력 2명,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갖추고 있음            - 대학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전담조직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연계한 도서관정보지원 서비스, 교육 및 연구 지원과 관련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음</p> <p><b>c)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 확인</b>            - 대학은 도서관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2급 정사서 1명과 준사서 1명을 도서관에 배치하고 있음            · 김○국, 2급정사서, 발급일 1994.02.25., 근무기간 1989.03.01.~현재            · 김○연, 2급정사서, 발급일 2018.02.21., 근무기간 2023.02.01.~현재            · 방○희, 준사서, 발급일 1998.02.25., 근무기간 2018.08.01.~2022.12.31.</p>	충족
		<p>(2) 도서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p> <p>a)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p>	<p><b>a)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b>            - 대학은 학생의 학습활동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행정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 실적이 있음</p> <p><b>b)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b>            - 대학은 도서관운영규정 제6조(운영위원회) 및 제32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심의사항)에 따라 도서관 사업결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심의 후 결과를 도서관 행정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p>	충족
		<p>(3)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결산)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p> <p>a) 충족: 평가기간 내 평균 21.6천원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p><b>a) 충족:</b>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가기간 내 평균 30.9천원(2021회계연도 기준 32.5천원, 2022회계연도 기준 29.3천원)으로 인증기준인 21.6천원을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5.2.2	(1) 대학은 법정 교사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교사확보율] a) 충족: 교사확보율 100%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a) <b>충족:</b> 교사확보율은 2022년 102.6%, 2023년 102.7%로 교사확보율 100%이상이므로 충족 판정함	<b>충족</b>
		(2)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준수 하고 있는가? a) 관련 규정 확인 b)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 c)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b>a)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학칙, 서울대학교직제규칙, 사무분장 규정, 환경안전혁신본부운영규정, 대학시설 이용에관한규정, 시설물관리규정, 연구실(실험실습실)안전관리규정 등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b>b)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b> -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건물, 운동장,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의 관리 정보 및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설비내역, 점검, 개·보수 내역 등을 전산화하여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력 관리, 안전점검·관리, 보수·보강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은 구성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매년 교육시설 만족도 조사, 학생의견 및 요구사항 조사,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또는 중장기 개선 계획으로 차기년도 행정부서 운영계획서에 반영하여 교육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유지 및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위원회 및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b>c)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b> - 대학은 교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수변전설비, 소방시설, 승강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망우119안전센터와 연계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과 연구실(실험실습실)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교양과목으로 ‘위기대응과 안전관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b>충족</b>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5.2.3	(1)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인 c)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인	<b>a)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규정을 갖추어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정보의 정확성, 목적의 명확성, 개인정보 이용제한, 개인정보 책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보안규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저장, 보관의 안정성 확보(사용자 영역)을 위하여 개인 PC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홈페이지 유출 방지 등 보안영역별로 정보보안을 조치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보안규정 제25조, 제28조,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저장, 보관의 안정성 확보(시스템 영역)를 위하여 설치장소 안전, 원격 접속 금지, 데이터베이스 안전 등 보안영역별로 정보보안을 조치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b>b)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인</b> -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리·보호·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행조직(사무처), 정보보안 수행조직(디지털혁신본부), 개인정보와 행정정보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자체 전문가 조직 외에 안전성 확보·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지원 조직 등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학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과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통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과 ‘정보보안수준진단’ 을 수행하고 있음  <b>c)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인</b> - 대학은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과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화재, 외부 해킹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백업의 수행과 백업자료의 분리보관을 시행 중이고, 장애 발생, 비상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음 - 대학은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혁신본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당해연도 수행결과와 차기연도 정보보안 보완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근거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충족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

##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기준 6] 교·직원



**[기준6] 교·직원**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6.1	6.1.1	(1) 대학은 교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a)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	<b>a)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칙에 근거하여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면직, 해임 등의 인사관리를 일반교원임용규정, 강의중점교원임용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외국인교원임용규정, 강사임용규정, 겸임교원임용규정, 명예교수규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규정집)와 대학 행정시스템(서울대학교 그룹웨어시스템)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 일반교원,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교원의 신규채용은 ①채용계획수립(학과 필요인원조사) ②채용분야 및 자격심의(교원인사위원회) ③신규채용계획 이사회 심의 ④채용공고 ⑤심사위원 위촉(외부위원 포함) ⑥심사(기초, 전공, 면접) ⑦임용제청 후보선정 ⑧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⑨임용제청 ⑩이사회 심의의결 ⑪임용 ⑫관할청(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고, ⑬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 결과 공개절차를 준수함 - 강사 및 겸임교원의 신규채용은 ①채용계획수립(학과 필요인원조사) ②채용분야 및 자격심의(교원인사위원회) ③채용계획 확정 ④채용공고(강사) 및 추천(강사, 겸임) ⑤학과 심사(기초, 전공) ⑥교원인사위원회 검증 및 심의 ⑦임용(총장) 등의 절차를 준수함 - 일반교원,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교원의 재임용은 ①재임용심의 신청통지 ②재임용신청 ③재임용평가(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④재임용 심의 요청 ⑤교원인사위원회심의 ⑥재임용 제청 ⑦이사회 심의의결 ⑧재임용 ⑨관할청(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함 - 강사 및 겸임교원의 재임용은 ①재임용심의 신청통지 ②재임용신청 ③재임용평가(학과) ④교원인사위원회심의 ⑤재임용(총장) 등의 절차를 준수함 - 교원의 승진임용은 일반교원임용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승진임용 대상자 확정, 교원업적평가 및 심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의, 승진임용 제청, 이사회 심의, 승진임용 통보 및 발령 등의 절차를 준수함  <b>b)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b> - 대학은 교원의 임용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1항~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53조의 4, 제54조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음 - 교원의 신규채용 시 ①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채용계획수립, 채용분야 및 자격심의, 채용계획 이사회 심의, 채용공고)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②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기초, 전공, 면접심사), ③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④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임용제청) 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임용결과 통보) ⑥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보고)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 교원의 재임용 시 ①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대상자 확정) ②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재임용 신청) ③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제53조의4 제1항(재임용 요건 미달 교원 출석통지, 재임용 요건 미달교원 소명,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④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재임용 제청) 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이사회 심의의결) ⑥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재임용 통보)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2) 대학은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a)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확인	<b>a)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교원의 다양한 책무 이행(연구, 교육, 산학취업, 봉사영역 등)을 보장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체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b>b)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확인</b> - 대학은 교원임면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계열, 성별, 보직여부 등을 고려한 7인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정년보장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계열, 성별, 보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함	충족
		(3)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량: 전임교원 확보율] a) 충족: 50%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전임교원 확보율은 2022년 60.6%, 2023년 60.9로 인증기준인 50.0% 이상이므로 충족 관정함	충족
		(4) 대학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a)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 확인	<b>a)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직원의 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인사규정을 갖추어 공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관계법령 및 직원인사규칙 등 직원 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정 준수를 이행함  <b>b)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 확인</b> - 대학은 직원임용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원인사위원회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을 확인함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6.1.2	(1) 대학은 전임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a) 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 확인 b) 교원 역량개발 지원 실적 확인 c) 교원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		<b>a) 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원 연구년 및 산업체 연수,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원연수규칙과 교직원복무규정을 갖추고 있음 - 연수기간은 1년 이내, 연수교원의 수는 전임 교원 총수의 10% 이내로 하며 신청자격은 10년 이상 근속하고 연수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6개월 이상의 연수 경력이 없고 연수기간 만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재직할 수 있어야 함  <b>b) 교원 역량개발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교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교직원 연수, 교원산업체연수, 신입교원연수, 교수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전공 및 직무 관련 다양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지원 실적: 직무연수(1,303명, 39개 과정, 12,213천원), 전공연수(200명, 58개 과정, 17,634천원) · 2023학년도 지원 실적: 직무연수(250명, 46개 과정, 23,937천원), 전공연수(30명, 16개 과정, 9,552천원)  <b>c) 교원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b> - 교원의 연구활동 성과를 중장기발전계획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핵심성과지표인 교원 교수역량강화지수를 관리하여 매년 교육품질 성과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행정부서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교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혁신지원사업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해 교원역량강화지수를 관리하고 결과를 교육품질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충족	
			(2)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수 등 장기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는가? a) 충족: 16주 이상의 연구년(연수학기) 시행 b) 보완: 충족기준에는 미달이나 충족기준의 1/2 이상 이행 b) 미충족: 기준의 1/2 미만 이행	<b>a) 충족:</b> 대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원 연수규칙에 의거하여 16주 이상의 연구년 및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준을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 · 2022학년도 시행 실적 : 2명(식품영양학과 김○희 교수,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조○경 교수) · 2023학년도 시행 실적 : 2명(간호학과 임○영 교수, 건축과 홍○주 교수)	충족
			(3)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a) 직원의 직무역량개발 관련 규정 확인 b) 직원의 직무역량개발 지원 실적 확인 c) 직무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확인	<b>a) 직원의 직무역량개발 관련 규정 확인</b> - 대학은 직원인사규칙 제63조(교육훈련)에 따라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력을 배양하게 하여 자기 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복무규정 제21조(교직원 교육 및 연수 의무), 제22조(교육 및 연수의 구분), 제23조(교육 지원 및 개선), 제24조(교육연수 결과의 관리 및 교육 대상자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의무)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갖추고 있음</p> <p><b>b)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직원 직무역량계발을 위해 법정업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 등으로 구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부서별 배정하여 총장의 승인 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지원 실적: 법정의무교육 (2,990천원)            * 2022학년도 지원 실적 직무교육 및 연수 (23,641천원)            * 2023학년도 지원 실적: 법정의무교육 (769천원)            * 2023학년도 지원 실적 직무교육 및 연수 (20,200천원)</p> <p><b>c) 직무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확인</b>            - 직원의 직무역량계발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과제(전략 5.지속발전형 대학경영 혁신)로 설정하여 핵심성과지표인 직원역량 강화지수를 관리하고 있고, 매년 교육품질 성과평가에 활용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학 운영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p>	
	6.1.3	<p>(1) 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가?</p> <p>a)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연구 활동 지원 실적 확인            c) 연구 활동 성과 평가와 활용 확인</p>	<p><b>a)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b>            - 대학은 교원 연구기능 강화, 능동적인 연구 개발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원 연구 촉진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연구실적평가규정, 교원연수규칙,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지침, 교원창업규정, 연구장비공동활용규정, 학술진흥위원회규정, 교내연구관리규정, 학술활동지원규정,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지식재산권운영규정 등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행·재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p> <p><b>b) 연구 활동 지원 실적 확인</b>            -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내연구관리규정 제15조(연구비의 지급 및 시기)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술활동지원규정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의거하여 국내외 학술활동비를 지원하고, 연구윤리지침 제7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에 의거하여 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1조(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및 보상금지급) 및 지식재산권운영규정 제4조(기술이전전담조직)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성과 인센티브와 직무발명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 창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원의 연구, 기술개발, 창작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비 지원 실적: 2022년(136,000천원), 2023년(120,192천원)            · 학술활동 지원 실적: 2022년(2,550천원), 2023년(3,350천원)            · 연구윤리교육 실적: 2022년(167명), 2023년(165명)</p>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b>c) 연구 활동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b> - 대학은 연구 책임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술진흥위원회규정 제3조(기능)에 의거하여 학술진흥위원회에서 교내연구비 지원, 학술활동 지원, 교수연구회 지원, 연구윤리교육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 연구 활동 지원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대학은 SU형 교육혁신 교수연구회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한 교과목을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성과를 활용하고 있음	
		(2) 교원의 연구실적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b> a) 충족: 평가기간 내 연구실적(정보공시 기준) 0.2건 이상 또는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정표 의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수 0.2건 이상 b) 미충족: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정보공시 확인 결과 평가기간 내 평균 0.5건으로, (2022년 공시)2021년 1인당 연구실적 0.5건, (2023년 공시)2022년 1인당 연구실적 0.5건으로 인증기준인 0.2건 이상으로 충족 판정함	충족
6.2	6.2.1	(1) 교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평가(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또는 질적평가]</b> a) 충족(Y) : (정량평가)평가기간 내 평균 30.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 (정성평가)질적 평가 우수 또는 개선계획이 우수하면서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 b) 보완(C)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선실적 또는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c) 미충족(N)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대학의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21회계연도 43.5%, 2022회계연도 42.2%로 평가기간 내 평균 42.9%이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2) 직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b>[정량평가(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또는 질적평가]</b> a) 충족(Y) : (정량평가)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 (정성평가)질적 평가 우수 또는 개선계획이 우수하면서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 b) 보완(C)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선실적 또는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c) 미충족(N)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b>a) 충족:</b> 대학의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21회계연도 23.0%, 2022회계연도 22.9%로 평가기간 내 평균 22.9%이므로 충족 판정함	충족
		(3) 대학은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a)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 확인 b)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 확인	<b>a)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 확인</b> -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직원복지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며 그룹웨어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교직원 복지지원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직원 직계자녀 교내 등록금 지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부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교내 단체 행사비 지원 등 장기근속자 포상, 정년퇴임교직원 포상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는 교원 및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충족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자체평가 판단이유	결과
			<p>b)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학년도 74,220,840원, 2023학년도 101,952,870(복리후생비 및 교직원자녀 등록금 지원비) 지원실적을 확인함</li> <li>- 2023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2023.11.21.)에 따라 격년 주기 교직원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li> <li>- 2023학년도 유연근무제 시행(2023.06.19.,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직원 대상)</li> <li>- 2023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2023.11.21.)에 따라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2024학년도부터,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직원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으로 확대 등)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2023년도 서일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III

대학 자체평가 분석 및 평가



**분석 및 평가 - 정성지표**

기관평가 인증 기준	기준별 자체평가 분석 및 평가
<b>[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사명은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양성’, 비전을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대학’으로 이와 부합하는 교육목표 “창의융합형 교육, 현장중심형 교육, 자기주도형 교육, 인성지성형 교육”를 실현하기 위한 「VISION 2025+」 중장기발전계획(2019~2021), 「The FUTURE 2025+」 중장기발전계획(2022~2025)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 성과지표, 담당부서를 정하고 연차별 실행 Road Map, 재정운영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li> <li>■ 전략별 핵심성과지표는 지표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에서 각 지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소관 위원회에서 분석 및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및 자체평가 후 교육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서에서는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환류되도록 함</li> <li>■ 대학은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in1 평가환류시스템’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소관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성과 평가 및 환류, 자체평가위원회의 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소관위원회 평가 검증,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교육성과 분석 및 환류·개선 제시 등을 통한 대학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노력함</li> </ul>
<b>[기준 2] 교육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산업체 요구수준과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외부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산업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이를 환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개편) 위원회의(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직무역량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단계적 검토,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을 확정함</li> <li>■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실습 및 이론 교과목의 편성 비율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계열별 전공교과의 실습시수 비율은 50% 이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 가능)</li> <li>■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의 충족기준은 157천원 이상으로 대학은 평가기간 내 평균 170천원(2021회계연도 170천원, 2022회계연도 170천원) 집행하여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li> <li>■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2022학년도 평균 27.6명, 2023학년도 평균 25.1명으로 기관평가인증 기준인 강좌 당 학생 수 평균 33명 이하 기준을 충족함</li> <li>■ 대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특성에 맞는 학사제도 적용을 위하여 융합 교육과정, SU형 다중트랙 교육과정,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집중수업, 원격수업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함</li> <li>■ 교양 교육과정은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과목을 매년 개설 및 폐기하여 교과목의 유연을 확보하여 재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ul>

기관평가 인증 기준	기준별 자체평가 분석 및 평가
<p><b>[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충원율은 2022년 100%, 2023년 100%로 기관평가인증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li> <li>■ 대학은 학생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을 전체 교과목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강생의 출결 자가진단 △장기결석에 따른 조기 경고 △교과목 담당 교원의 상시 모니터링 △대학 본부의 주기적 관리 점검 등을 진행하는 등 학사관리의 엄정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였음</li> <li>■ 대학은 학사경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3단계 관리체계에 따라 학사경고자와 학사경고위험군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사경고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제적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의무적으로 상담하고 학생상담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 비교과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학사경고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함</li> <li>■ 대학은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조직을 구성하여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수업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교수, 학생, 학과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체계적인 교수학습 향상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두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지원 협력 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사전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평가·환류 시스템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반영하고 있음</li> <li>■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역량을 세분화하고, 관련 부서는 기초 학습 역량강화, 학습역량 강화(자기주도학습강화, 전공학습역량강화), 발현(성과공유)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역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li> <li>■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교수자가 강의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li> </ul>
<p><b>[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랑구청, 서울북부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지자체 및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일·중랑 잡페어』, 『신입생 비전 진로캠프』, 『창업대전』, 『알짜기업 Job매칭』 등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하여 2022년부터 취업률 향상을 이루어 냈으며, 서일메이커센터 구축, 창업 장학금제도 및 창업 휴학제도 시행을 통해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 촉진을 통하여 2022년 사업자 등록건수 30건을 달성함</li> <li>■ ‘진로설계’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여 저학년부터의 적성, 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공기반 취·창업 교과목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창업 교과목의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취·창업 교과목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적용함</li> <li>■ 취업취약계층의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여대생 특화, 인문계열 특화, 해외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경력개발로드맵 단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li> <li>■ 학생성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상담-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실전 취·창업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One-Stop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li> </ul>

기관평가 인증 기준	기준별 자체평가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현장실습학기제시행세칙 등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3자(실습기관, 학생, 대학)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함</li> <li>■ 대학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대상의 학과별 사전교육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학-학생-실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li> <li>■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 계획과 성과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실습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에 활용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준 5] 학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일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략방향인 학생감동형 지원 혁신을 위하여 재학생 종합만족도 조사, 학생 의견 및 요구사항 조사, 교육시설 만족도 조사, 학생자치기구 간담회, 학생자치기구 건의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li> <li>■ 학생자치활동 지원은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및 단위 동아리(14개) 활동, 언론기구인 방송국, 학보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 활동 기구별 각각의 독립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자치기구별 행사 및 운영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li> <li>■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대학정보공시 기준 2021회계연도 30.9천원, 2022 회계연도 29.3천원으로 기관평가인증 기준 21.6천원 이상을 상회하여 충족하고 있음</li> <li>■ 대학의 교사시설 확보율은 2022년 102.6%, 2023년 102.7%로 기관평가인증 기준 100%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준 6] 교직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대학 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겸임교원, 강사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소관 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열, 성별 보직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엄정성 제고로도 포함</li> <li>■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갖춘 전임교원 채용을 적절히 수행하여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이 2022년 60.6%, 2023년 60.9%로 인증기준(50.0%)을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li> <li>■ 대학은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해 교원연수규칙에 의거하여 16주 이상의 연구년 및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2명, 2023년도 2명의 교원 연구년 및 산업체연수 운영 실적이 있음</li> <li>■ 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2022년도 0.47건, 2023년도 0.53건으로 인증 기준인 0.2건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li> <li>■ 우리 대학은 등록금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이 2021회계연도 43.4%, 2022회계연도 42.2%로 평균 30%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21회계연도 13.1%, 2022회계연도 12.6%로 평균 11%이상을 상회하여 충족하고 있음.</li> </ul>